

특 정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집중호우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4. 8.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3건	3	0	0	0	0	0	0	0
1	@ @ @	※※※ 군계획도로 (중로1-5호)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1							
2	◎ ◎ ◎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1							
3	□ □ □ □ □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 군계획도로(중로1-5호)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1
2.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4
3.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9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군계획도로(중로1-5호)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 @
내 용

☎☎☎ @ @ @에서는 2024. 01. 29. (주)◀◀건설 000와 계약 후 “※※※ 군계획도로(중로1-5호) 확포장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사 업 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군계획도로 (중로1-5호)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560m,B=20m	2024.02.05. ~ 2024.07.28.	1,708	986	722	(주)◀◀건설 000	10%

1. 공사비 과다 계상 등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 @@@에서는 “※※※ 군계획도로(중로1-5호)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차선도색 715㎡에 사용되는 노면 표지용 페인트 162포를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에 반영하여 사업비 0,00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반영하였다.

2. 실시설계용역 감독 미흡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로용벽 표준도(설계기준, 2008. 11. 22.)」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및 도로교 설계기준 등의 제반 기준 등을 반영하여 도로건설공사에 적용할 용벽표준도를 작성 보급하여 설계의 표준화 및 도로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표준도에서 제시하는 단면들의 설계조건 및 적용기준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검토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 군계획도로(중로1-5호)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반영한 도로용벽 구조물 중 캔틸레버구조의 도로용벽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구조물의 안전성(활동, 전도, 침하 등)을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좌안 No.8 ~ No.20구간에 반영된 J형 측구 구조물은 도로용벽 표준도와 단면형식 및 작용하중이 상이하여 구조물 단면에 대한 구조검토 등을 시행하여 하나, 별도 검토 없이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 중이다.

조치할 사항 @@@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도로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단면 J형 측구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노면 표지용 페인트는 관급자재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재지역인 ☎☎☎ ★★면 일원에 생활하수 및 각종 오·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및 용역 현황

(단위 : 천 원)

공 사 명 (용역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용역)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 ★★면 ○○리	하수관로 16km 하수처리장 170m³/일	18,758	15,001	3,757	2020.12.07. ~ 2025.06.30.	(주)△△건설 외 1개사	59%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면 ○○리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2,868	2,868	-	2021.05.24. ~ 2025.06.30.	(주)▽▽자녀링 ▽▽이엔씨(주)	59%

본 사업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로 ☎☎☎ ○○○에서는 2022.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아래 [표 2]와 같이 포장복구용 골재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접수하였다.

[표 2] 순환골재 사용계획

구 분	용 도	규 격	소 요 량(m³)	비고
계			6,356	
천연골재	포장복구 (보조기층)	40mm	3,814	관급자재 설계 (직접구매)
순환골재			2,542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사항 위반 및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¹⁾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여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순환골재)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며,

1)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순환골재)이 공급지체 등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2020.10.13. 대구지방조달청에 본 공사 입찰공 고 의뢰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공사'로 명시하여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으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순환골재를 직접구매도 하지 않은 채, 관급 공급(미선정)업체의 관행적 납품행태²⁾로 인해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³⁾된다는 사유만으로 발주청은 2022.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정보고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구입 승인 통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사급구매로 현장에 납품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

2) 관급 업체의 운반비용 절감을 위해 한번에 많은 물량을 현장에 납품하거나 타 사급구매 사업장 우선 납품

3) 자재 야적장 부지 확보 어려움 및 공급량, 공급시기 불명확 등으로 시의 적절한 수급 어려움 등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발주청인 ○○○○에서는 교통통제(신호수) 공종의 경비 항목 미적용(노무비로 적용)에 따른 사업비 00,000천 원이 과다 계상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건에 대한 설계변경 미이행 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중요~~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읍 ★★리 130-18번지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담당하면서 2022. 10월부터 2024. 6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현장 안전조치, 공사기간 산정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의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1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	노유자시설 1,034㎡	□□□□□ (22.10~24.10)	23.7.19.	23.6.21. (23.7.31)	190	3,725	(주)○○○ 건설 (☎ ☎건축사무소)	착공신고 40일지연

1. 추락 및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작업장의 바닥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⁴⁾, 수직보호망⁵⁾ 또는 방호선반⁶⁾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 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 시공된 수직보호망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재설치 하도록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이번 감사기간(2024. 6. 10.~14.) 중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건축물 외부비계에서 작업하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안전발판 안전조치 미흡, 시스템 비계 장선, 띠장 캡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설치 부적정 및 수직 보호망 훼손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

4)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5)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6)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

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1]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공사 안전관련 부적정 현황

수직보호막 설치 부적정	공사현장 주변정비 부적정
비계 및 안전난간 설치 부적정	거푸집 설치 부적정에 따른 마감훼손 등
옥상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수직보호막 훼손 및 낙하방지대책 미흡

2.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 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읍 ★★리 130-18번지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 ●●이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면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2024. 6. 14. 감사일 현재까지 보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성과품을 승인하였고, 공사 입찰 시에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기후변화 요인 및 주 5일 근무제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향상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령 기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⁷⁾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

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준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 및 건설공사 진행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배치기준(안), 의견 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배치기준(안),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착공 한 사실이 있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의견수렴 결과 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7)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과 달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건축구조기준 적용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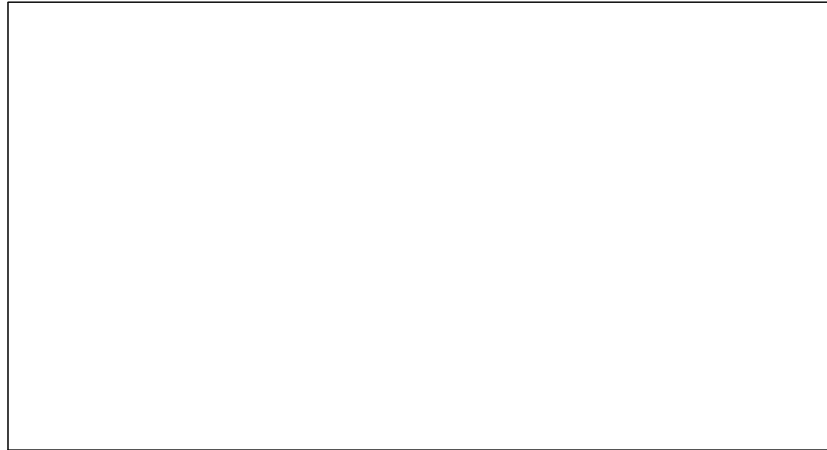
「건축구조기준」 KDS 41 12 00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에 따르면 지역별 기본풍속 중 고령지역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지역에 따라 28~30m/sec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건축사 등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점검 할 때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용역 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읍 ★★리 130-18번지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공사 도서 확인·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 기본풍속이 28m/sec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그 기준에 미달한 26m/sec로 개정 전 기본풍속이 적용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보완 없이 2023. 5. 25. 실시설계용역을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2] 지역별 기본풍속



조치할 사항 ~~중요~~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